당진시의회 공고 제2020 - 19호

아래 조례를 제·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와 「당진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15일

당 진 시 의 회 의 장

1. 조례안 목록

조례안	발의의원
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	최 연 숙 의 원

2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**2020년 10월 20일까지**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당진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①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)

②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당진시 시청1로 1,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우편, FAX(355-1901), 전자우편(mijinuli@korea.kr), 직접방문 등. **단, 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.**

마. 기타 문의 사항은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(350-482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조례안 각 1부

2. 예고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1부. 끝.